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0835호, 2025. 3. 25. 공포, 2025. 9. 26. 시행)의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이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등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8조제2항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문구수정(안 제3조제2항)
- 나. 전승교육사 인정 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로 관련 문구(이수자) 삭제(안 제18조제2항)
- 다. 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(시행령 안 제22조의2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”을 “추진실적을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종목의 이수자 중”을 “종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유단체”를 “보유단체, 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추진실적을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전승교육사의 인정) ① (생략)	제18조(전승교육사의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<u>종목의 이수자</u>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종목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	<u><삭 제></u>
가. <u>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</u> <u>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</u> <u>을 한 사람</u>	
나. <u>시·도무형유산 보유자로</u>	

서의 경력이나 전승교육사
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
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
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
한 사람(해당 시·도무형
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
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
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
정된 경우만 해당한다)

2. ~ 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22조의2(우수 이수자의 선정·지원) ①·② (생략)

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
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
보유자,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
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
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
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
한다.

1. ~ 3. (생략)

④ · ⑤ (생략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우수 이수자의 선정·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보유 단체, 전승교육사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	
연 락 처	(063) 280 - 1612